

대전고등법원 2017. 6. 28 선고 2017나10303(본소), 2017나10310(반소) 판결 [점유회수 청구의 소 · 건물명도]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1. 신홍선건설 주식회사
2. 미래건설 주식회사
3. 수광전기 주식회사
4.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변론 종결 2017. 6. 14.

판결 선고 2017. 6. 28.

제 1 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2. 9. 선고 2015가합102647(본소),
2016가합100563(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별지 목록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는 별지 목록 순번 6번 내지 9번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반소 :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들 앞으로 인도집행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순번 6번 내지 9번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피고들이 불법적으로 침탈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들은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 소유권에 기하여 다시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예비적 반소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1쪽 2행부터 10행까지 사이에 적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② 원고 미래건설, 수광전기, A은, 장종합건설 또는 E이 위 원고들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공사대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장종합건설은 한덕원과 E을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2010. 2. 22.경 확정된 이후 하도급업체인 위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승인한 이래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소멸시효를 다투지 않았고, E은 2008. 11.경 위 원고들에게 임대 및 분양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최우선으로 직불방식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등 위 공사대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2010. 2. 23.경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로부터 본소 제기 전에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공사대금채권은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이므로, 설령 채무자인 장종합건설 또는 E이 이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수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들에게는 시효이익의 포기를 주장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2014다1459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전지원, 판사 김상우, 판사 문주형

별지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동남구 D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 3층 507.355m²

지하 2층 503.68m²

지하 1층 560.78m²

1층 515.4211m²

2층 568.7311m²

3층 568.7311m²

4층 563.3311m²

5층 563.3311m²

6층 563.3311m²

7층 563.3311m²

8층 335.2536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289.9468m²

2. 1동의 건물의 표시: 제1항과 같음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조 270.8861m²

3. 1동의 건물의 표시: 제1항과 같음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2호 철근콘크리트조 179.5857m²

4. 1동의 건물의 표시: 제1항과 같음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239.0468m²

5. 1동의 건물의 표시: 제1항과 같음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2호 철근콘크리트조 211.08m²

6. 1동의 건물의 표시: 제1항과 같음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조 239.0468m²

7. 1동의 건물의 표시: 제1항과 같음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402호 철근콘크리트조 205.68m²

8. 1동의 건물의 표시: 제1항과 같음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501호 철근콘크리트조 239.0468m²

9. 1동의 건물의 표시: 제1항과 같음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502호 철근콘크리트조 205.68m². 끝.

